

	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운영 규정	규정 번호	4-1-27
		제정 일자	2024.4.15.
		개정 일자	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(이하 “교육과정편성위원회”라 한다.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교육과정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연구개발
2.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3. 기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에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운영 학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3.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『회의비 지급 지침』에 의거해 회의비를 지급 할 수 있다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